

의안번호	제757호
의결 연월일	2017년 월 일 (제360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7년 12월 05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5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12월 05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새 정부 ‘일자리 창출’, ‘경제 활성화’, ‘국민안전 강화’ 등 현장행정 중심의 인력보강과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<기구 조정>

- 명칭변경(안 제4장제3절, 제40조, 제41조, 제42조, 제43조)
 - 축산위생연구소 → 동물위생시험소

<분장사무 조정>

- 기획관리실 소관사무 조정 및 이관(안 제6조)
 - (조정)행정의 창의·실용 등에 관한 사항 → 열린 혁신에 관한 사항
 - (이관) 청년, 저출산, 고령화 관련 업무 : 행정국 → 기획관리실
- 행정국 소관사무 신설(안 제7조)
 - (신설)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·기획·조정 에 관한 사항 : 행정국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불 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7호로 하고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결혼 및 고령화·저출산 대책 수립 등 인구정책 총괄

제6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로 하고,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, 청년복지 정책 추진 총괄

9. 열린 혁신에 관한 사항

10. 주요 국정·도정 시책 평가 및 도지사 공약사업 관리

제7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8호를 삭제한다.

17.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·기획·조정에 관한 사항

제4장제3절의 제목 “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”를 “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”로 한다.

제40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(이하 “축산위생연구소”라 한다)”를 “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(이하 “동물위생시험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축산위생연구소”를 “동물위생시험소”로 한다.

제41조 중 “축산위생연구소”를 “동물위생시험소”로 한다.

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축산위생연구소”를 “동물위생시험소”로 한다.

제43조 중 “축산위생연구소”를 “동물위생시험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·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농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농 분 과	농정국 (농업정책과)	농정국, 농업기술원, 산림환경연구소, 동물위생시험소, 농산사업소, 내수면산업연구소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

②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”를 “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(이하 “시험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“연구소장”을 “시험소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2호 서식, 별지 제3호 서식, 별지 제4호 서식 중 “축산위생연구소”를 각각 “동물위생시험소”로 한다.

③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축산위생연구소”를 “동물위생시험소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축산위생연구소”를 “동물위생시험소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기획관리실)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5. 도 예산편성 관리 및 시·군 재정 지도</p> <p>6.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·시군의 지방 공기업 육성 지도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9.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10. 조례·규칙의 심사·공포,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</p> <p>11. 각종 통계조사·분석 및 자료 관리</p>	<p>제6조(기획관리실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결혼 및 고령화·저출산 대책 등 인구정책 총괄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8. <u>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, 청년 복지 정책 총괄</u></p> <p>9. <u>열린 혁신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0. <u>주요 국정·도정 시책 평가 및 도지사 공약사업 관리</u></p> <p>11. (현행 제9호와 같음)</p> <p>12.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 <p>13. (현행 제11호와 같음)</p>
<p>제7조(행정국) (생략)</p> <p>1. ~ 16. (생략)</p> <p>17. <u>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 총괄</u></p> <p>18. <u>청년복지, 결혼 및 고령화·저출산 대책 수립·지원</u></p>	<p>제7조(행정국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16. (현행과 같음)</p> <p>17. <u>지역공동체 사업 총괄·기획·조정</u>에 관한 사항</p> <p><u><삭제>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절 <u>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</u></p> <p>제40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와 분석,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정, 가축개량 및 보급 관련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<u>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(이하 "축산위생연구소"라 한다)</u>를 설치한다.</p> <p>② <u>축산위생연구소</u>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.</p>	<p>제3절 <u>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</u></p> <p>제40조(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(이하 "동물위생시험소"라 한다)</u>----- -----.</p> <p>② <u>동물위생시험소</u>----- -----.</p>
<p>제41조(소장) <u>축산위생연구소</u>에 소장을 두고,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	<p>제41조(소장) <u>동물위생시험소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2조(소관사무) <u>축산위생연구소</u>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	<p>제42조(소관사무) <u>동물위생시험소</u>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같음)</p>
<p>제43조(지소) <u>축산위생연구소</u>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,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43조(지소) <u>동물위생시험소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관계 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③ ~ ⑥ (생략)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9조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